

朝鮮代 度量衡器의 實크기에 관한 研究

田 大 熙

A Study on the Real Sizes of a Ja, a Doi and a Don
in the Time of Chosun Dynasty

Dae Hi Jeon

目 次	
1. 序 論	3.2 朝鮮代量器의 實크기
2. 朝鮮代의 度制와 그 度器의 實길이	4. 朝鮮代의 衡制와 한돈중의 實무게
2·1 朝鮮代의 度制變遷	4·1 朝鮮代의 衡制와 葉錢
2·2 文獻圖尺과 度器의 實길이	4·2 朝鮮代의 葉錢重量과 한돈중
3. 朝鮮代의 量制와 그 量器의 實크기	5. 結 論
3·1 朝鮮代의 量制變遷	

Abstract

This paper studied on the length of a Ja, the volume of a Doi and the weight of a Don in the time of Chosun Dynasty.

The following results are deducible from them:

1. The length of a Youngjo-Ja, which least changed of all Jas, changed from 27.6cm at the 28th year of King Sejong to 30.3cm at the 6th year of Kangmu, though it was 29.8cm once through this period.
2. The volume of a Mal(10 Doi) became more from 4.12l at the 28th year of King Sejong as the length of a Youngjo-Ja was longer, and it became to 23.08l in accordance with the system of Pyongsickwon for a time and to 18.0l at the 9th year of Kangmu
3. The weight of a Don changed from 2.66g at the 28th year of King Sejong to 3.75g at the 6th year of Kangmu, though it was 2.99g at the ages of King Suckjong~King Youngjo and 3.45g at the age of King Kojong for a time.
4. The size of ordinary a Ja, a Mal and a Don of daily use was fairly different from the original unit.

5. The Youpjeons of Dang-2-Jeon were minted upon base of the unit weight of that time, but the most of Dang-1-Jeon were cast up to the same weight of the Heseo-Jeon at the age of King Sejong.

1. 序論

度量衡(Weight and Measures)이란 漢書 律歷志에 「度」는 長短을 재는 것이고 「量」은 多少를 되는 것이며 「衡」은 權衡(權은 分銅, 衡은 저울질을 뜻함)하는 것, 即 輕重을 저울질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人類初期의 度量衡은, 그 基準이 처음에는 人體의 各部分이었고 이에 이어서 穀物粒에서 求하였을 것이라는 것이 定說이다. 그 實例를 들면 尺은 손으로 寸數를 재는 象形文字이고 FEET(FOOT)는 발길이, GRAIN은 穀物粒의 重量 등이다. 그러나 社會生活的 發達로 集團規模과 交易範圍가 擴大됨에 따라서 그 基準이 보다 正確하고 客觀性이 있는 竹木이나 金屬片 등으로 變遷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東洋의 尺貫法은 黃河流域에 모여 살던 漢民族이 처음으로 創制하였고 西洋의 FEET-POUND法은 古代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에서 發生되어 發展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의 度量衡制度는 古代中國에서 傳來되어 發展하였고, 日本制度¹⁾는 三國時代에 우리나라에서 傳播되어 發展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度量衡器가 어느 때부터 使用되었는가는 자세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러나 三國史記의 百濟 東城王 22(500)년의 記事, 三國遺事의 善德王 12(643)년의 記事 등으로 미루어 보아서 度量衡制度가 三國時代 以前에 이미 確定되었는 것 같고, 그것은 唐의 制度와 같았을 것²⁾으로 생각되고 있다. 또 이 制度가 高麗代까지 어떻게 發展하였는가도 역시 잘 모르겠으나 高麗史에 다음과 같은 記事が 있다.

高麗史의 食貨志³⁾에는 文宗 23(1069)년에 量田步數를 定하였는데 田1結은 方33步(6寸 爲1分, 10分 爲1尺, 6尺 爲1步^{*1}), 2結은 方47步, 3結은 方57步3分, ……5結은 方73步8分, ……10結은 方104步3分이라고 記錄되어 있다. 또 高麗史의 刑法志⁴⁾에는 文宗 7(1053)년에 官斛規格이 米斛은 長廣高을 1尺2寸(1,728立方寸), 稗租斛은 1尺4寸5分(3,048.6立方寸), 末醬斛은 1尺3寸9分(2,685.6立方寸), 大小豆斛은 1尺0寸9分(1,295.0立方寸)으로 定하여 있다.

朝鮮初에는 周尺^{*2}의 길이 조차도 確實치 않았으므로 太祖 2(1393)年⁵⁾에는 判中樞院事 許稠를 시켜서 尺度를 校正하게 하였고, 世宗 28(1446)年 9月⁶⁾에는 12律의 基本音인 黃鍾律를 내는 正確한 黃鍾管笛을 만들고 그 길이를 基準으로 해서 營造尺^{*8}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黃鍾尺, 造禮器尺,

*1. 高麗 文宗 7년의 斗斛規定에는 길이 單位의 크기 順이 分寸尺으로 되어 있으나, 同 23년의 量田步數에서는 寸分尺順으로 되어 있다. 後者の 寸分尺順은 16年 사이에 變更되었다가 그 後에 다시 前者로 還元되었다고 볼 수가 없고 中國과 日本에도 그러한 例가 안 보이며 高麗史의 다른 部分에도 誤字가 있는點으로 보아서 原記錄의 單位가 잘 못된 것 같다.

*2. 周尺은 中國의 周代尺으로서 傳來되어 온 東洋의 옛 標準尺이고 田地의 丈量里數의 表示나 天文儀器의製作, 儀式用으로 많이 使用되었던 자이며, 5周尺 1量地尺이다. 이 자는 時代와 地域에 따라서 差가 크다.

*3. 營造尺은 量器, 軍器, 船舶, 家屋, 城塞 등의 製造나 修築에 쓰였으며, 造禮器尺은 壽衣, 葬具, 冠婚의用具를 만들 때 使用하였다.

周尺, 布帛尺 등을 銅으로 原器를 만들어서 各地方廳에 보내어 標準尺으로 利用하게 하였으며, 이 制度가 經國大典[睿宗 1(1469)年에 完成]에 의해서 公고히 法制化되었다. 그러나 壬辰·丙子의 두차례의 큰 戰亂에 의해서 金屬製 基準尺(原器)이 모두 流失됨에 따라서 度量衡制度가 다시 풀란하게 되었으므로 肅宗 41(1715)年 2月⁹⁾에는 戸曹에 命해서 銅으로 新原器를 만들어서 各道에 보냈다.

英祖 16(1740)年⁷⁾에는 三陟府所藏의 世宗代布帛尺[脊面에 正統 11(1446)年 12月 詳定新造 布帛尺이라는 銘文⁸⁾이 있음]이 發見됨으로써 다시 度量衡制度를 世宗代 것으로 再整備하였고, 英祖 20(1744)年에는 繢大典을 刊行해서 違令時 處罰한다고 規定하였다.

光武 6(1902)年 7月⁹⁾에는 勅命에 따라 宮內府官制中新에 平式院을 設置하고 内部大臣 李載完을 總裁로 任命해서 度量衡規則의 名稱과 命位를 우리 固有의 것에 日本制度를 加味한 折衷法으로 制定하게 하였다. 또 이와 別途로 平式院製造所를 만들어 度量衡器의 製造와 檢定을 담당하게 하였다. 光武 8年 1月⁹⁾에는 官制改定에 따라 平式院이 農商工部의 一課로 되고 同製造所도 同部의 監督下에 들어갔으며, 光武 9年 3月⁹⁾에는 新度量衡法(從前法^{*4)}을 公布하여 그 名稱과 命位를 더욱 日本制度에 가깝게 만들어서 京城(現 서울)과 仁川에 試驗의 으로 施行하였다. 이 制度는 光武 11年에 大邱, 晉州, 平壤에, 光武 12年에는 群山, 木浦, 鎮南浦 등의 14個 地域에 擴大해서 實施되었으며, 그 結果가 좋았으므로 隆熙 3(1909)年 9月에는 이것을 所謂 新度量衡法으로 改定⁹⁾하기에 이르렀다.

朝鮮代 度量衡器의 實치수에 대해서는 朴의 研究¹⁰⁾¹¹⁾¹²⁾ 외에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이것은 主로 朝鮮代의 建築物과 石造物에 의해서 營造尺 한자의 實길이를 求하였고, 黃鍾律管을 만들어서 그에 들어가는 물무게에서 한돈, 한斤의 實무게를 求하였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精度는 全혀 알 수 없고 이들의 量이 全朝鮮代를 通해서 어떻게 變하였는지도 全혀 알 수가 없다.

本稿는 經國大典¹³⁾, 四千年文献通考⁵⁾, 度量衡衍義¹⁾ 등에 記載된 朝鮮代 諸尺의 相對的 길이와 補禮備要¹⁴⁾, 四禮便覽¹⁵⁾ 등에 登載된 同 圖示諸尺의 實長과 現存하는 同諸尺의 實長 등을相互比較해서 朝鮮代 諸尺의 相對的 길이가 어떻게 變遷하였고 그 諸尺의 實長이 얼마인가를 調査研究하였으며, 이것이에 의해서 朝鮮代 量器의 實크기를 알아 보았다. 또 葉錢의 重量은 그 發行當時의 單位 무게와 密接한 關係가 있다는 點에 着眼해서 朝鮮代의 한돈, 한兩 등의 實무게를 求하였다.

2. 朝鮮代의 度制와 그 度器의 實길이

2.1 朝鮮代의 度制變遷

朝鮮初에 周尺은 모두 家禮에 실린 司馬公의 石刻本⁵⁾¹⁶⁾에 의존하였으나 그 板本이 낡아서 差誤가 많았다(表2 參照). 그러므로 太祖 2(1393)年에 判中樞院事 許稠로 하여금 陳理家藏의 周尺을 얻어서 元時院事 金剛의 象牙周尺과 家禮周尺을 參考로 하여 周尺을 校正해서 度制를 整備하게 하였고 이 것으로써 道路里數, 射擊場步法, 儀象, 圭表에 이르는 길이의 基準으로 삼았다. 그 周尺의 길이는

*4. 從前度量衡法(從前法)은 光武 9年부터 試用되었고 隆熙 3年에 正式으로 改定된 新度量衡法으로서 現行 度量衡法(現行法)에 대한 命名이다. 現行法 1尺(現行尺)은 從前法과 같이 30.3cm이나 現行法 1升(現行 升)은 從前法 1升(從前升)이 1.8ℓ인데 대해서 2.0ℓ이다.

다음⁵⁾과 같았다.

世宗 28(1446)年 9月에는 黃鍾音을 正確히 내는 黃鍾管笛을 만들어서 度量衡의 基本으로 삼았으며 그 管의 크기⁵⁾는 黃鍾尺(4.1 參照)으로 管長이 9寸이고 空闊가 9分이며 容積이 810分이고 容黍가 1,200粒이라고 한다. 經國大典에 의하면 10厘=1分, 10分=1寸, 10寸=1尺, 10尺=1丈이고 黃鍾尺基準의 諸尺의 길이¹⁸⁾는 다음과*⁵ 같다.

1周尺=6寸0分6厘黃鍾尺，1營造尺=8寸9分9厘黃鍾尺
1造禮器尺=8寸2分3厘黃鍾尺，1布帛尺=1尺3寸4分8厘黃鍾尺(2)

이러한 諸尺은 銅으로 만들어서 戸曹(度支部)에保管하는 한편 各地方廳에도 1件씩 보내어서 尺度를 平校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後의 數次에 걸친 兵亂에 의해서 모두 遺失되고 三陟府의 布帛尺만이 남았으며 度量制度가 불란하였다. 그러므로 英祖 26年에는 三陟府所藏의 世宗朝布帛尺을 命하여 時用諸尺度를 校正해서 中外에 頒行하게 하였다. 다음은 이 諸尺의 경이⁵⁾이다.

高宗 光武 6(1902)년에는 平式院을 設置해서 우리 固有의 度量衡制度에 日本制度를 加味한 折衷法을 制定하였으며, 白金棒의 米突度器原器를 採用하였다. 이 度制는 10毫=1厘, 10厘=1分, 10分=1寸, 10寸=1尺, 10尺=1丈, 1,386尺=1里로 定하였고 西洋(泰西)尺間에는 다음과 같이 規定⁵⁾하였다.

1美利米窩(mm)=準我 3匣3毫(1營造尺=1日本曲尺=100/3.3cm=30,303cm)

10mm=1先知米窩(cm)=準我 3分3厘

$10\text{cm} \equiv 1\text{大始米突(dm)} = \text{々} 3\text{寸}3\text{分}$

10dm=1米 窄(m) = 々 3尺3寸

$10\text{m} = 1\text{十米} (\text{dekam.}) = \approx 33\text{尺}$

10 dekam = 1 赫得米密(hetom.) =

10. $\text{hetom} = 1$ 岬路米空(km) = 4,3300 尺

低浓度时，测量误差 $\pm 1.6\% \sim \pm 10.0\%$

2. 100周是一1周 30周是一1月 으로 宗廟연고 奉廟是 1米高 으로 準我 5周일 으로 相當⁽⁶⁾ 6月연고 100cm

1周目=6寸6分 級溝目=20cm (4)

新嘉坡地積金12年，1金，18金，1銀，10銀，1兩，10兩，1年，10年，1錫及海陸

地積間에는 다음과 같이 規定하⁵⁾였다.

3. 經國人典 工典 及重闕典 解說內容의 法制處發行의 大典(1963)이나 一志社發行(1971)의 것이나 宇柏伯著의 韓國史에서 모두 黃鍾尺 1尺=周尺 0.603尺=營造尺 0.899尺=造禮器尺 0.823尺=布帛尺 1.348尺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1周尺=黃鍾尺 0.603尺, 1營造尺=黃鍾尺 0.899尺……의 誤記라고 생각된다.

1先知憂(cə) —當我 1把, $100cə = 1$ 憂(ə, 알) —當我 1負, $100ə = 1$ 赫得憂(ha) —當我 1結
以上의 (1)~(4)式을 整理하면 <表 1>로 表示된다.

<表 1> 度 制 의 變 遷

時代 (年代)	周 尺	黃 鐘 尺	營 造 尺	造 禮 器 尺	布 幢 尺	縱 穗 尺	橫 穗 尺
太祖2年(1393)	1尺 =	6寸	6寸6分3厘	7寸3分	—	7寸0分9厘	7寸8分9厘
世宗28年(1446) (經國大典)	1尺 =	6寸0分6厘	6寸7分4厘	7寸3分6厘	4寸5分0厘	—	—
	1尺6寸5分0厘	1尺 =	1尺1寸1分2厘	1尺2寸1分5厘	7寸4分2厘		
	1尺4寸8分4厘	8寸9分9厘	1尺 =	1尺0寸9分2厘	6寸6分7厘		
英祖26年(1750)	1尺 =	6寸6分7厘	6寸6分7厘	7寸3分3厘	—	7寸6分7厘	7寸9分3厘
	1尺5寸	1尺 =	1尺0寸0分1厘	1尺1寸		1尺1寸5分	1尺1寸8分9厘
光武 6年(1902)	1尺 =	—	6寸6分	—	—	—	—

2.2 文獻圖尺과 度器原器의 實길이

朱子家禮(中國 明朝 丘濬編)¹⁶⁾와 性理大全書(1415年, 明, 胡廣 등編)¹⁷⁾ 卷18(家禮1)*6에는 각각 <寫 1>과 <寫 2>의 司馬公家 石刻本의 圖尺이 있다. 이들에는 古尺이 當令省尺 5寸5分弱이고 周尺(神主用周尺 亦見 南軒家所刻本)은 當三司布帛尺 7寸5分弱, 當浙尺 8寸4分이며, 三司布帛尺은 比上周尺 更加 3寸 4分, 即 省尺 又名 京尺은 當周尺 1尺3寸4分, 當浙尺 1尺1寸5分이라고 同一한 說明文이 붙어 있다. 따라서 이들의 圖尺은 同種이라고 생각되며, 그 圖尺의 實長과 그 相對長의 關係를 求하면 <表 2>와 같다.

<表2> 朱子家禮와 性理大全書의 諸圖尺 길이

文 獻 名	周 尺	三司布帛尺(省尺) (京尺)	浙 尺	古 尺
朱子家禮와 性理大全書에 共通	1尺 = 1尺3寸4分 (7寸3分6厘)	7寸5分弱 1尺 = 5寸5分弱	8寸4分 1尺1寸3分 (6寸2分1厘)	(1尺3寸5分8厘) (1尺8寸2分) 1尺 =
朱子家禮 圖尺	15.3cm	(20.4cm)	(18.2cm)	13.75cm (11.27cm)
性理大全書 圖尺	17.1cm	(22.9cm)	(20.36cm)	14.7cm (12.58cm)

()는 計算值

喪禮備要(寫3, 1620年 金長生序)¹⁸⁾에는 右以正統 11(1446)年 詳定尺樣刻于石이라는 說明과 같아 18.8cm의 周尺, 25.1cm의 造禮器尺, 27.6cm의 营造尺 및 41.8cm의 布帛尺의 4種의 圖尺이

*6. 朱子學은 宋代의 朱熹에 의해서 大成한 學問으로서 性理學이라고도 하며, 우리 나라에서는 高麗忠烈王 12(1286)년에 安珦이 처음으로 朱子全書를 中國에서 가져와서 研究하기 시작하였다. 朝鮮年代에 들어와서는 이 思想을 國是로 삼았으므로 크게 發達하였으며, 그 代表的 學者가 李滉과 李珥이다.

朱子家禮는 明代 丘濬이 冠婚喪祭의 四禮에 관한 朱子의 學說을 수집해서 만든 冊이며, 略해서 家禮라고도 한다. 이것은 高麗末葉에 朱子學에 뒤따라서 우리 나라에 수입되었고 朝鮮代에는 朱子學이 國家의 政教綱領으로 確立됨에 따라서 이 家禮는 널리 遵行되었다.

性理大全書는 1415年에 胡廣 등이 明 永樂帝의 勅命에 따라서 엮은 책이며, 周子, 張子, 朱子 등의 性理說과 理氣說은 集錄한 것이다.

있다.

喪祭儀輯錄 書疏式篇¹⁸⁾에는 <寫 4>와 같이 19.4cm의 周尺, 26.1cm의 造禮器尺, 27.6cm의 营造尺 및 42.4cm의 布帛尺의 圖尺이 있다.

四禮便覽 卷之5(憲宗 10年—1844年 出版)¹⁹⁾에는 20.1cm의 周尺, 27.4cm의 造禮器尺, 29.8cm의 营造尺 및 44.8cm의 布帛尺의 圖尺이 있고, 그 增補版(光武 4年—1900年 出版)²⁰⁾에는 周尺의 길이만 20.1cm에서 20.0cm로 줄었고 다른 세 가지 자는 같은 길이이다.

高橋 正²¹⁾著의 度量衡衍義(1922年 出版)²²⁾에는 <寫 7>과 같은 20.5cm의 周尺, 30.3cm의 营造尺, 48.8cm의 平布正尺 등의 光武 6년의 改定度器가 5分之1의 縮尺으로 表示되어 있다.

또 高橋 著書²³⁾에 의하면 往年에 尺度의 長短을 精查하려고 그 度器原器를 찾아 보니 多幸이 도 度支部(戶曹)의 庫底塵中에서 6種의 度器原器가 發見되었으며, 그것을 政府財政廳間部가 調査한 바에 의하면 日本曲尺(Kanesasi: 30.3cm)으로 다음과 같았다. 卽, 周尺은 6寸8分(20.6cm), 造禮器尺은 9寸0分5厘(27.4cm), 营造尺은 1尺(30.3cm), 黃鍾尺은 1尺1寸2分(33.9cm), 布帛尺은 1尺6寸1分(48.7cm), 量地尺은 3尺3寸(100cm)이다. 그리고 全相運 著書²⁴⁾에 의하면 德壽宮에 秘藏되어 있는 銅製黃鍾尺(原器라고 생각됨)의 길이가 34.10cm였다고 하니 周尺은 20.66cm, 营造尺은 30.65cm로 換算된다.

以上의 文獻上의 圖尺實長과 度器原器의 實長, 그리고 諸尺의 相互關係를 總括하면 <表 3>와 같다.

光武 5년의 貨幣條例와 9년의 同條例 改定件에 의해서 半圓銀貨, 10錢 銀貨 등의 6種의 新鑄

<表 3>

文獻圖尺과 度器原器의 實測長 變遷

文 獻 名	周 尺	營 造 尺	造 禮 器 尺	布 帛 尺
喪禮備要 (1446)	18.8cm 1尺 = 1尺 = 1尺4寸6分8厘/6寸8分1厘 1尺3寸3分5厘/7寸4分9厘	27.6cm 6寸8分1厘/1尺4寸6分8厘 1尺 = 1尺 = 9寸0分9厘/1尺1寸0分	25.1cm 7寸4分9厘/1尺3寸3分5厘 1尺1寸0分/9寸0分9厘 1尺 = 1尺 =	41.8cm 4寸5分0厘/2尺2寸2分2厘 6寸6分1厘/1尺5寸1分4厘 6寸0分1厘/1尺6寸6分5厘
喪祭儀輯錄	19.4cm 1尺 = 1尺 = 1尺4寸2分2厘/7寸0分3厘 1尺3寸4分3厘/7寸4分4厘	27.6cm 7寸0分3厘/1尺4寸2分2厘 1尺 = 1尺 = 9寸4分4厘/1尺0寸5分9厘	26.1cm 7寸4分4厘/1尺3寸4分4厘 1尺0寸5分9厘/9寸4分4厘 1尺 = 1尺 =	42.4cm 4寸5分8厘/2尺1寸8分3厘 6寸5分1厘/1尺5寸3分6厘 6寸1分5厘/1尺6寸2分7厘
四禮便覽	20.1cm 1尺 = 1尺 = 1尺4寸8分4厘/6寸7分4厘 1尺3寸6分3厘/7寸3分4厘	29.8cm 6寸7分5厘/1尺4寸8分1厘 1尺 = 1尺 = 9寸1分9厘/1尺0寸8分8厘	27.4cm 7寸3分4厘/1尺3寸6分2厘 1尺0寸8分8厘/9寸1分9厘 1尺 = 1尺 =	44.8cm 4寸4分9厘/2尺2寸2分7厘 6寸6分5厘/1尺5寸0分3厘 6寸1分2厘/1尺6寸3分5厘
增補四禮便覽	20.0cm 1尺 = 1尺 = 1尺4寸9分0厘/6寸7分1厘 1尺3寸7分0厘/7寸3分0厘	29.8cm 6寸7分1厘/1尺4寸9分0厘 1尺 = 1尺 = 6寸1分9厘/1尺0寸8分8厘	27.4cm 7寸3分0厘/1尺3寸7分0厘 1尺0寸8分8厘/9寸1分9厘 1尺 = 1尺 =	44.8cm 4寸4分6厘/2尺2寸4分2厘 6寸6分5厘/1尺5寸0分3厘 6寸1分2厘/1尺6寸3分5厘
度量衡衍義 (1902)	20.5cm 1尺 = 1尺 = 1尺4寸7分7厘/6寸7分7厘	30.3cm 6寸7分7厘/1尺4寸7分7厘 1尺 = 1尺 =	—	正布正尺(綿布尺苧布尺) 48.8cm(38.7 36.0) 4寸2分0厘/2尺3寸8分1厘 6寸2分0厘/1尺6寸1分2厘

*7. 高橋 正는 1922(大正11年)當時에 朝鮮總督府 殖產局에서 우리 나라의 度量衡關係를 담당하고 있던 實務者였으며, 度量衡法을 普及해서 活用하게 할 目的으로 우리 나라 制度를 日本과 中國, 臺灣의 制度와 對比해 가면서 記述한 「度量衡衍義」라는 菊版 500餘面의 著書를 京城에서 發行하였다.

原 器 名	周 尺	營 造 尺	黃 鐘 尺	造 禮 器 尺	布 幢 尺
度支部保管度器 原器	20.6cm 6寸8分	30.3cm /日本曲尺=	33.9cm 1尺1寸2分	27.4cm 9寸0分5厘	48.7cm 1尺6寸1分
德壽宮秘藏銅製黃鐘尺	(20.6cm)	(30.6cm)	34.1cm	(27.6cm)	—

()는 計算值

貨가 發行되었다. 〈表 4〉와 〈表 5〉에는 同條例值²¹⁾와 貨幣의 實치수(測定值)를 比較하고 있으며, 1曲尺은 30.3cm임을 알 수 있다.

〈表 4〉 光武5年 貨幣條例一補助貨幣式樣과 實測值(1901)

貨幣種類	徑曲尺 ※1	徑 cm ※2	cm/曲尺	量 目 ※1	重 量 g ※2	g/錢	表面狀態
半圓銀貨	1寸0分2厘	3.08	30.196	3錢5分9厘4毛2(13.478 3g)	13.30	3.700 (3.750)	美 上
20錢銀貨	7分4厘	2.29	30.946	1錢4分3厘7毫7(5.391 4g)	5.36	3.728 (3.750)	極美
5錢白銅貨	6分8厘※3	1.76	25.882	1錢2分4厘4毫1(4.665 4g)※3	2.23	3.792 (3.750)	美 上
1錢青銅貨	9分2厘	2.78	30.217	1錢9分 (7.128 0g)※4	7.00	3.684 ※5 (3.752)※6	美 上

〈表 5〉 光武9年 貨幣條例中 改定件一補助貨幣式樣과 實測值(1905)

貨幣種類	徑曲尺 ※1	徑cm ※2	cm/曲尺	量 目 ※1	重 量 g ※2	g/錢	表面狀態
10錢銀貨	5分8厘	1.78	30.690	7分1厘8毫8(2.695 5g)	2.67	3.715 (3.750)	美 上
半錢青銅貨	7分5厘	2.22	30.733	9分5厘0毫4(3.564 0g)	3.62	3.809 (3.750)	美 上

※1 條例值, ※2 筆者實測值, ※3 5錢白銅貨는 條例值와 實品의 치수 相異함.

※4 8.280g는 光武9年 改定件值로 보아서 7.1280g의 誤記임.

※5 實測值에서 計算

※6 量目에서 計算

筆者測定值 平均 : 1曲尺 = 30.576cm (30.30cm의 +0.9%)
1錢重 = 3.727g (3.75g의 -0.6%)

大韓民國 第5共和國 紀念鑄貨(20,000원, 1000원, 100원)의 許容重量公差 = ±(2.043~2.083)%이다.

또 高橋²²⁾에 의하면 朝鮮末期에 各地에서 使用되던 度器의 길이를 調查하니 〈表 6〉와 같았다고 하고, 筆者が 수집한 朝鮮代 度器의 길이를 調查하여 보니 〈表 7〉과 같았다. 여기에서 筆者が 調査한 것은, 布帛尺^{*8}은 수집품 중에서 눈금이 金屬象嵌된 精巧品 10個에 대한 것이고, 营造尺(T尺)은 全數

〈表 6〉 朝鮮末期의 通用諸尺 치수(高橋)

尺 種	周 尺	營 造 尺(木尺)	綢 尺	布 幢 尺	量 地 尺
最 短	6寸4分(19.39cm)*	1尺(30.30cm)	1尺3寸(39.39cm)	1尺7寸(51.51cm)	3尺3寸(100cm)
最 長	6寸8分(20.60cm)	1尺3分(31.21cm)	1尺6寸(48.48cm)	2尺(60.60cm)	3尺5寸(106.05cm)

* ()는 30.30cm/尺의 計算值임

8. 當時에 布帛尺의 길이와 거의 같은 다음의 針尺이 많이 通用되고 있었으므로 그것이 布帛尺인가 針尺인가는 斷定하기가 困難하다. 即, 針尺은 木製 또는 竹製의 私製 裁縫尺이며, 손가락 長이를 標準으로 해서 눈금을 매긴 것이라고 한다. 이 자는 布帛尺(30.3×1.612=48.8cm) 보다 5분이 길고 曲尺로서 약 1尺6寸6分이므로 30.3×1.66=50.3cm程度이며, 이 40尺이 1疋이다.

<表 7> 朝鮮代 通用諸尺 치수

尺 種	營造尺(T尺)	布 帛 尺
最 短	29.9cm	51.2cm
最 長	31.9cm	53.4cm
加乘平均長	30.7(8個)	52.1(10個)

器라고 생각되고 이들에는 1.0%의 差 밖에 없으며, 이들의 原器와 度量衡衍義의 圖尺은 同一度器이고 이들의 길이 間에도 0~0.6%의 差 밖에 없다. 따라서 <表 3>의 資料는 1.0% 以下의 誤差로서 信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喪禮備要의 圖尺은 「右以 正統 11年……」으로 미루어 보아서 世宗 28年에 正確한 黃鍾音을 내는 黃鍾管笛을 만들고 이것을 基準으로 해서 度量衡制度를 再確立한 當初의 石刻諸尺의 實長을 表示한다고 생각된다.

朱子家禮와 性理大全書의 圖尺은 이들 책의 著作年代를 생각하고 <表 1>~<表 3>를 比較하면 이當時의 中國과 太祖 2(1393)年 以前에 우리나라에서 使用되던 자(尺)라고 생각되고 太祖 2年에 許稠로 하여금 度制를 再整備하게 한 緣由를 짐작하게 한다.

喪祭儀輯錄은 發刊年代가 未詳이나 四禮便覽과 同改正版은 각각 1844年과 1900年에 發刊되었으므로 이들 圖尺은 이러한 年代前後에 使用하던 公式度器의 길이를 表示한다고 생각된다.

그리므로 朝鮮代의 度制는 <表 1>과 같이 變遷하였고 그들 度器의 實長은 <表 3> 및 <表 13>과 같이 漸次로 若干씩 길어졌다고 判斷^{*9}된다. 그러나 <表 5> 및 <表 6>와 같이 朝鮮代의 一般市中에 通用되던 度器에는 그 長短差가 營造尺과 같이 3% 程度인 것에서부터 布帛尺과 같이 20%程度에 달하는 것도 있었다.

또 우리 固有의 度量衡制度에 日本制度가 加味된 折衷法은前述한 바와 같이 光武 6(1902)年에 平式院을 設置한 後부터라고 하나 <表 4>의 光武 5年 貨幣條例의 貨幣치수로 보아서 이 制度는 이미 光武 5年부터 實施되었다고 보는 것이 妥當한 것 같다.

3. 朝鮮代의 量制와 그 量器의 實크기

3.1. 朝鮮代의 量制變遷

朝鮮代 初期의 量制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으나 世宗代부터의 制度는 經國大典, 續大典 등에 明文

*9. 大典會通 解題³³⁾에 의하면 營造尺은 光武 6年까지 使用되었으며, 그 길이는 日本曲尺에 比해서 1分이 짧다고 한다. 이것은當時의 營造尺 길이가 29.8cm(表13 參照)이고 日本曲尺 길이가 30.3cm이므로 前者는 後者에 比해서 正確하게는 1分6厘 程度가 짧으나 大體로 實際와 잘一致하는 길이이다.

또 全⁶⁾에 의하면 世宗實錄 五禮吉禮序例의 造禮器尺 圖尺의 길이가 28.9cm였다고 한다. 그러나尹³⁴⁾에 의하면 世宗 27年(乙丑-1445)에 五禮儀는 上이 五禮의 未備함을 慮하사 許稠, 姜碩德 등에 命하여 洪武舊制와 東國儀禮를 參酌 損益해서 撰著한 것이라고 하니 위의 五禮 圖尺은 黃鍾管을 度量衡의 基本으로 삼았던 世宗 28年(丙寅) 以前의 圖尺이라고 判斷된다. 萬若에 이 造禮器尺이 太祖 2(1393)年에 許稠에 의해서 整備된 圖尺이라고 한다면 이 太祖代의 尺度⁵⁾는 1周尺=21.097cm, 1黃鍾尺=35.162cm, 1營造尺=31.821cm로 된다.

化되어 있다. 經國大典 工典 度量衡條¹⁸⁾에 의하면 量制는 10勺을 1合, 10合을 1升, 10升을 1斗, 15斗를 1小斛(平石), 20斗를 1大斛(全石)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世宗實錄 丙寅(28年) 9月 27日條²³⁾와 續大典 工典 度量衡條²⁴⁾에 의하면 諸量器의 長廣高는 <表 8>과 같다고 하였다. 또 六典條例에 의하면 高宗代 量用銅斛²⁵⁾도 <表 8>의 치수의 升, 斗, 小斛 및 大斛의 量器를 만들어서 戸曹에 保管하고 木製로는 3斗와 4斗의 量器를 만들었다고 한다.

〈表 8〉 世宗實錄上의 諸量器의 크기(營造尺 길이)

量 器 種	長(寸)	廣(寸)	高(寸)	立 方 寸
合(客)	2.00	0.70	1.40	1.96
升(司)	4.90	2.00	2.00	19.6
斗(笠)	7.00	7.00	4.00	196
小斛(平石)	20.00	10.00	14.70	2940
大斛(金石)	20.00	11.20	17.50	3920

光武 6년에는 <寫 8>²⁵⁾과 같이 外部는 木製이고 内部는 鋼製이었다. 平式院 標準量器를 만들었으며, 光武 9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日本式의 新度量衡法(從前法)을 試用함으로써 1升이 64, 827立方分(1.8ℓ)²⁶⁾으로 되었다. 即 10勺이 1合, 10合이 1升, 10升이 1斗, 10斗가 1石이고 西洋(泰西)量法則과의 間²⁷⁾에는,

1先知翊突(*cl*)—準我 5抄5撮4圭

10cl=1大始翊突(dI) — 準我 5勺5抄4撮4圭

10d l=1 翻空(l)=準我 5合5勺4抄3撮5圭

10升=1大可丽空(deka升)=准我5升5合4勺3抄5提2圭

10 deka = 1 赫得畝(hectol) — 準我 5斗5升4合3勺5抄2撮4去

3. 2. 朝鮮代 量器(斗斛)의 實크기

¹⁰ 世宗代의 营造尺 길이는 <表 3>에서 27.6cm이므로 丹寧實錄上의 長器는

또 營造尺 길이가 29.8cm일 때(憲宗~高宗代)는

光武6(1902)年의 平式院 標準量器는 <寫 8>²⁵⁾에 서, 當時의 1鑄造은 30, 303cm²로

$$5\text{合量器} = 6.9 \times 2.15 \times 2.85 \text{立方寸} = 42.280 \text{立方寸} \equiv 1.176 \text{升} / (1 \text{升} \equiv 2.352 \text{ 立方寸})$$

$$7\text{合}5\text{勺量器} = 7.6 \times 2.85 \times 2.9 \text{立方寸} = 62.814 \text{立方寸} = 1.74736l \quad (1升 = 2.3298l)$$

1升5合量器=8.2×3.43×4.3立方寸=120.942立方寸=3.364 37l (1升=2.242 9l)

平均하면

1升=2.308 3l, 1斗=23.083l(7)

光武9(1905)年부터 試用한 新度量衡法에 의하면 1升은 64.827立方寸²⁶⁾이고 當時의 1尺은 30.303 cm¹⁰⁾으로

1升=64.827立方寸=9合9勺7抄8撮3圭=1.8l從前升, 1斗=18l.....(8)

그러므로 世宗代 以後의 量器는 平式院의 標準量器가 出現할 때까지 營造尺의 길이의 變遷에 따
라서 1斗=4.121l 程度에서 若干씩 커져서 1斗=5.187l로 되었다고 생각되나 舊韓國에 들어와서 日
本式과 折衷하면서 急作히 4.5倍나 큰 1斗=23.083l 程度의 量器로 왜 變하였는지 알 수가 없고,
光武 9年부터는 新度量衡法에 따라서 1斗=18l로 바뀌었다.

<寫9-C>는 그 容量과 烙印 혹은 陰刻文으로 보아서 光武 9(1905)年부터 試用하기 시작해서 隆熙
3(1909)年에 確定된 從前法(1升=1.8l)의 量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中에서 (1)은 乙酉(隆熙
3年)式 双武先이란 陰刻이 있는 5合量器($19.1 \times 8.0 \times 5.9 \text{cm}^3 = 0.901 52l = 0.500 84$ 從前升)이고, (2)
는 七合五勺, 平 및 二二八七九의 烙印이 있는 量器($21.6 \times 7.1 \times 8.8 \text{cm}^3 = 1.349 57l = 0.749 76$ 從前
升)이며, (3)은 一升五合, 平 및 玖 四七八五九의 烙印이 있는 量器($23.35 \times 8.9 \times 13.0 \text{cm}^3 = 2.701$
 $59l = 1.500 09$ 從前升)이므로 (1)은 從前法의 私製品이고 (2)와 (3)은 平式院에서 만든 從前法의 官
製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高橋²⁷⁾에 의하면 世宗實錄上의 1斗(196立方寸)은 從前升(1.8l)으로 3升0合2勺3抄餘¹⁰⁾이고, 木製의
3斗量器와 4斗量器의 1斗는 從前升으로 각각 3升5合2勺과 3升6合5勺이며, 甲午(高宗 31-1894年)銅
斗는 1斗가 3升6合이라고 하였다. 이 實크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196立方寸의 1斗
가 從前升으로 3升0合2勺3抄餘라는 것에서 逆算하면 高橋는 世宗實錄上의 營造尺길이를 30.303cm
로 잡고 있다¹⁰⁾. 그러나 高宗代의 1營造尺 길이는 30.3cm가 아니라 29.8cm이므로 196立方寸의
1斗는 3.023 從前升이 아니라 2.882從前升이고 木製 3斗量器의 1斗는 3.355 8從前升, 4斗量器의
1斗는 3.479 7從前升, 甲午銅斗의 1斗는 3.432 2從前升으로 된다. 따라서 <寫9-D>의 (1)은
 $18.0 \times (5.5 + 6.8) \times 1/2 \times 5.7 \text{cm}^3 = 0.630 99l = 0.350 55$ 從前升이고, (2)는 $17.4 \times 6.5 \times 6.5 = 0.723$
 $84l = 0.402 13$ 從前升이므로 이들은 平式院量器 以前의 高宗代의 私製 1升量器라고 判斷된다.

<表 9> 朝鮮代 常用量器의 實크기(從前量器)

量器種	升量器	斗量器
最 小	3合	3升
最 大	3升8合	1斗6升8合

*10. 大典會通 解題²⁸⁾에 의하면 日本樹의 1升容量은 650餘立方寸이므로 經國大典의 1小石(15斗)=4升5合餘이
고 1大石(20斗)=6升3合餘이라고 하나 世界大百科事典(平凡社)²⁹⁾에 의하면 1升=64.827立方寸(曲尺)으
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後者の 1升은 $64.827 \times (3.03\text{cm})^3 = 1.8033\ell$ 로 된다. 또 經國大典의 1斗는 193立方寸이며,
1寸=3.03cm, 1從前升=1.8l과 하면 1斗=5.452l=3.029 從前升, 1小石=45.436 從前升, 1大石=60.581
從前升으로 된다. 따라서 前者の 카합은 斗升의 誤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世宗代의 1營造尺
이 30.3cm라는 근거는 생각할 수도 없다.

<寫9-E>의 (1)型에는 다음 치수의 (a),
(b), (c)의 量器가 있고 (2)型에는 (d), (e)
의 밑이 넓고 위가 좁은 量器가 있다. 특히
(e)에는 倉村, 李承旨宅, 戊申((隆熙 2-
1908年) 二月 日의 陰刻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모두 從前法의 私製 半斗容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a) $25.4 \times 25.9 \times 12.8 \text{cm}^3 = 8.323l \approx 4.6$ 從前升
- (b) $25.7 \times 25.7 \times 12.8 \text{cm}^3 = 8.453l \approx 4.7$ 從前升
- (c) $26.7 \times 26.7 \times 13.7 \text{cm}^3 = 9.767l \approx 5.4$ 從前升
- (d) $[(26+23) \times 1/2]^2 \times 14 \text{cm}^3 = 8.404l \approx 4.7$ 從前升
- (e) $(27.3+24.8)(27.5+24.9) \times 1/4 \times 14 \text{cm}^3 = 9.623l = 5.346$ 從前升

<表 9>는 高橋²⁸⁾가 調査한 朝鮮末期의 常用量器의 容量差이다.

4. 朝鮮代의 衡制와 한돈중의 實무게

4.1 朝鮮代의 衡制와 葉錢

東洋最初의 度量衡制度는 漢書 律歷志에 明記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衡은 銖, 兩, 斤, 鈞 및 石으로 나누며, 黃鍾管에 들어가는 1,200粒의 矩黍(치장 1龠)의 重量을 12銖라 하고 24銖=1兩, 16兩=1斤, 30斤=1鈞, 4鈞=1石이라고 하였다. 또 唐代의 開元通寶의 重量은 2.4銖로 鑄造되었고 이것이 後代貨幣의 基本重量인 1錢(돈)重으로 되었다.²⁹⁾

日本에서는 大寶令(702年)에 의해서 唐制와 같이 矩黍中位의 100粒重量을 1銖로 정하고 그 24銖=1兩, 16兩=1斤 등으로 정하였으며, 무로마치(室町)時代(1338~1573年)부터는 開元錢의 重量을 基準으로 한 叉(돈)와 貫이 사용되었다고 한다.²⁹⁾

우리나라의 葉錢도 太宗 15(1415)년에 唐나라의 5銖錢에 準해서 鑄造하도록 決定된 바³⁰⁾있으며 世宗 5(1423)년 9月에는 唐의 開元通寶에 準해서 10돈중(錢重)을 1兩으로 하고 錢文을 朝鮮通寶로 決定해서 그 해 11月부터 楷書體錢을 鑄造³⁰⁾하였다. 肅宗 4(1678)년 4月에는 常平通寶를 發行하기 시작해서 重量 1錢2分의 初籌單字錢을 鑄造하였고, 肅宗 5年 9月에는 肄二의 折二錢을 重量 2錢5分으로 鑄造³⁰⁾하였다. 또 英祖 7(1731)년 9月에는 肅宗 21(1615)년 이후 36年間 發行이 中斷되었던 常平通寶를 發行處를 明示한 肄字二字錢으로 鑄造³⁰⁾하였으며, 英祖 18(1742)년 6月부터는 重量과 品質의 管理手段으로서 肄字二代身에 千字文을 表示한 것을 發行³⁰⁾하였고, 英祖 28(1752)년 7月부터는 五行(金, 木, 水, 火, 土)과 壬(英祖 28年 壬申)를 肄字로 하는 등 重量 2錢과 1錢8分의 中型錢을 發行³⁰⁾하였다.

우리나라의 衡制度를 살펴보면 世宗 28(1446)년 9月에 12律의 基本音인 黃鍾律을 내는 正確한 黃鍾管笛을 만들고 그에 물을 채워서 그 물무게를 衡의 標準, 即 黃鍾管의 容水重量을 88分으로 定하였다. 이 衡制는 經國大典에 의해서 法制化되었으며, 10釐=1分, 10分=1錢(돈), 10錢=1兩, 16兩=1斤으로 하였고 大衡은 100斤저울, 中衡은 30斤저울, 小衡은 3斤저울 또는 1斤저울로 하였다.

黃鍾管의 치수는 四千年文獻通考³¹⁾에 다음과 같이 記錄되어 있다. 即, 「黃鍾은 管長이 9寸이고 空圍가 9分이며 空積이 810分이고 容黍가 1,200粒이다. 黃鍾之律은 今樂院에 銅律管 2部가 있으므로 营造尺으로 黃鍾長을 채어 보니 1尺이다. 度尺之制는 营造尺 길이가 黃鍾尺으로 8寸9分9厘이나 이

에 1厘를 더하면 9寸이 되어 便히 챙 수 있다……」 따라서 黃鍾長은 黃鍾尺으로 9寸이고 嚴格하게는 8寸9分9厘이고 營造尺으로 1尺이 된다. 그러므로 黃鍾尺으로 810立方分의 容水重量이 88分(8.8錢)이고 1營造尺=27.6cm(表2 參照)이므로 10°C의 물의 密度를 0.999 73g/cm³라 하면 世宗代의 1錢重은 2.662 3g으로 된다.

光武 6(1902)年부터는 平式院을 設置하고 日本法을 加味한 新衡法을 制定하였다. 이 制度는 質量 1,000g의 白金分銅을 改定衡原器로 하고 그 質量의 400分之 15를 한 兩(37.5g)이라 하였으며, 10毫=1厘, 10厘=1分, 10=1錢, 10錢=1兩, 16兩=1斤이라 하였다. 따라서 西洋衡法間에는 다음 關係³²⁾가 있다.

- 1美利久覽(mg)—當我 2絲7忽
- 10mg=1先知久覽(cg)—當我 2毫6絲7忽
- 10cg=1大始久覽(dg)—當我 2厘6毫6絲7忽
- 10dg=1久覽(g)—當我 2分6厘6毫6絲7忽
- 10g=1大可久覽(dekag.)—當我 2錢6厘6毫6絲7忽
- 10dekag.=1赫得久覽(hetog.)—當我 2兩6錢6分6厘6毫6絲7忽
- 10hetog.=1岐路久覽(kg)—當我 26兩6錢6分6厘6毫6絲7忽

4.2 朝鮮代의 葉錢重量과 한돈중

歷史的인 前節의 考察에 의하면 朝鮮代의 葉錢重量도 그 當時의 單位重量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

〈表 10〉은 朝鮮朝 肅宗代부터 英祖代까지 發行된 常平通寶 當2錢의 美品 以上의 重要葉錢에 대한 實測 平均重量이다. 肅宗 5(1679)年에 發行된 一部의 當2錢은 무게가 2.5錢重, 肅宗5~17年과 英祖 18~28年에 發行된 當2錢은 2錢重, 英祖 28(1752)年 以後의 것은 1.8錢重이라고 할 때 한돈중은 同表와 같이 2.972~3.031g으로서 아주 잘 一致하여 全平均 돈중이 2.991g으로 된다.

〈表 10〉 常平通寶 當2錢 實重量

發行年代	葉錢種類	個數	表面磨滅 狀態	平均重量(偏差)	1錢重量
肅宗 5年 (1679)	戶二·武二·賑二	6	美品以上	7.445g/2.5錢 (-5.61~+4.26)%	2.978
肅宗 5~17年 (1679~1691)	開二·工二·賑二·海二 ·戶二	9	"	6.061g/2錢 (-13.03~+12.54)%	3.031g
英祖18~28年 (1742~1752)	開·宣·營·摠·統·戶 訓一千字文	15	"	5.943g/2錢 (-9.09~+9.42)%	2.972g
英祖 28年以後 (1752)	禁二·營二 營·訓一千字文	8	"	5.371g/1.8錢 (-5.23~+9.29)%	2.984g (全平均 2.991g)

〈表 11〉은 朝鮮朝 世宗代부터 高宗代까지 發行된 朝鮮通寶外 常平通寶의 當 1錢中에서 美品 以上的 重要單錢의 實測 平均重量을 調査한 것이다. 世宗 5(1423)年에 發行된 楷書體錢은 唐의 開元通寶에 準하여 10돈중을 한양이라고 해서 朝鮮通寶로 發行하였다고 하며, 이 實測平均重量이 4.096g

이다. 따라서當代의 한 돈중은當1錢 葉錢을 中心으로 하면 4.095g 内外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世宗代에衡制度를確立할 때 黃鍾管의 容水重量을 基準으로 하였으므로 朝鮮通寶의 楷書體錢重量은當時의 한 돈중과는關係없이唐나라의開元通寶와 같은重量으로發行되었음을 알 수 있다.

英祖代부터憲宗代까지의常平通寶當1錢은純祖代의均字錢과같이3.645g의것도있으나大部分이世宗代의楷書體錢과같이4.0g内外이므로이러한葉錢도當代의單位重量과는關係없이世宗代과同一重量의當1錢으로發行된것에틀림이없는것같고,또한이當時의平衡精度가상당히높았다는것을알수있다.그러나高宗代부터는무슨까닭인가는알수없으나當1錢葉錢의重量이3.45g内外로바뀌었고한돈중의實重量이이程度인朝鮮代서울이많이現存하므로이當時의한돈중은3.45g程度로바뀐것에틀림이없다.

〈表 11〉常平通寶當一錢 實重量

種類	鑄造所	發行年代	大小型	表面磨滅狀	數量	平均重量g	備考
朝鮮通寶	楷書體錢	世宗5(1423)부터	•	美上品	5	4.096	世宗 27(1445)年 鑄錢 廢止, 世宗 28年 度量 衡制 確立, 肇宗 5年 常平通寶 鑄造開始
常平通寶	平字錢	英祖 3~1727年	一	"	8	4.093	
	戶字錢	" 7~1731年	一	準未使用	40	4.079	
※	營字錢	" 18~1742年	小	"	16	4.201	
※	"	"	大	"	6	4.232	
※	摠字錢	" 33~1757年	小	"	60	4.170	
※	"	"	大	"	60	4.130	
	均字錢	純祖 2~1807年	一	美上品	8	3.645	
	禁字錢	" 23~1823年	小	準未使用	15	3.911	
	"	"	大	"	18	3.908	
	訓字錢	" 28~1828年	一	"	79	4.01	
	經字錢	" 31~1831年	一	美品	3	3.84	
	開字錢	憲宗 2~1836年	一	美上品	40	3.96	
	武字錢	高宗 18~1881年	小	"	11	3.467	光武 6(1902)年 日本 法 및 미터法 採用(1돈 중=3.75g)
	"	"	大	"	1	3.410	

※ 準未使用品 摠字錢 120個 重量分布

小型右日型	20個平均重量	4.11	平均 4.17g	全平均	偏差(+7.6~-5.6)%
小型左月型	"	4.14			最高 4.46, 最低 3.90g
" 右月型	"	4.25			
大型右日型	"	4.13	平均 4.13g		4.145g
" 左月型	"	4.06			
" 右月型	"	4.21			

〈表 4〉와 〈表 5〉에는光武 5년의貨幣條例와光武 9년의同改定件의補助貨幣式樣과 그 實測重量이表示되어있다. 이들에서當時의한돈중은3.75g이라는것을알수있다.

〈表 12〉는5개의朝鮮代서울에대해서각눈금에달리는重量을調査한것이다.(A)의象牙대貴金屬用서울은상당히눈금이正確하나精密用이라고생각되는銀象嵌 눈금의(B)藥서울이나(E)

의 象牙裝飾 저울도 普通級의 돌추저울 (C)(D)와 거의 같이 각 눈금에 달리는 重量에 상당한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각 눈금에 달리는 重量으로 보아서 (A)(D)(E)는 한돈중 3.45g의 高宗

〈表 12〉 朝鮮代 저울의 달림

(A) 貴金屬用 象牙대 저울 一高宗代(3.45g/錢)

前	눈 금	0	1 錢			
	달 텁	—	3.36g			
後	눈 금	1	2	3	4	5錢
	달 텁	—	6.86	10.21	14.00	17.10g
		3.42	3.43	3.40	3.50	3.42g/錢

(B) 銀象嵌 藥저울 一光武代(3.75g/錢)

前	눈 금	0	0.5	1.0	1.5兩	
	달 텁	—	18.7	—	55.75g	
	—	37.4	37.2	37.17g/兩		
中	눈 금	1	2	3	4	5 兩
	달 텁	—	73.5	111.0	147.3	184.9g
	—	37.2	36.75	36.67	36.83	36.73g/兩
後	눈 금	5	10	15	0	20兩
	달 텁	176.9	354.0	529.9		702.45g
	—	35.38	35.40	35.33		35.12g/兩

(C) 돌추 보통저울 一光武代(3.75g/錢)

前	눈 금	1	2	3	4	5斤
	달 텁	609.2	1188.2	1759.0	2351.0	2877.9g
	—	38.08	37.13	36.60	36.73	35.97g/兩
後	눈 금	5	6	8	10	12 斤
	달 텁	2990.9	3696.3	4823.95	6013.85	7122.3g
	—	37.39	38.50	37.69	35.59	37.10g/兩

(D) 銀象嵌대 돌추 보통저울 一高宗代(3.45g/錢)

前	눈 금	1	2	3	4	
	달 텁	537.2	1091.75	1646.9	2202.9g	
	—	33.58	34.12	34.31	34.42g/兩	
中	—	—	—	—	—	
後	눈 금	10	20	24斤		
	달 텁	5382.1	9599.4g	0		
	—	33.01	30.00g/兩	0		

(E) 象牙裝飾 銀象嵌저울 一高宗代(3.45g/錢)

	눈 금	0	1	2	3	4	5	6	8	10	15斤
前 달 립	—	582.3	1143.2	1670.9	2188.0	2247.85	3204.7	4352.8	5400.55	8113.6g	
	—	36.39	35.79	34.81	34.19	34.35	33.38	34.01	33.75	33.80g/兩	
中 달 립	눈 금	5	10	15	20	30斤					
	2885.9	5670.55	8013.6	10440.10g	0						
後 달 립	눈 금	20	0		90斤						
	9565.15g				0						
	29.89				0						

代 저울 같고 (B)(C)는 한돈중이 3.75g인 光武代 저울이라고 判斷된다.

上述한 것을 總括하면 朝鮮代의 한돈중(錢重)의 實무게는 世宗代에 2.66g程度이고 肅宗~英祖代에 2.99g 程度이며 高宗代에는 3.45g程度이고 光武 5年以後에는 3.75g로 時代에 따라서 者干식 점차로 增加된 것으로 判斷된다. 그리고 市中에 實際로 通用되던 衡器에는 한 兩, 한 斤 등에 대해서 달리는 重量이 저울에 따라서 差異가 있고, 같은 저울에 대해서도 각 눈금에 따라서 상당히 큰 差가 있다.

5. 結論

朝鮮代의 度量衡器의 實크기에 관한 以上의 研究에서 다음의 結論을 얻었다.

1. 朝鮮代의 1營造尺 길이, 1斗 크기 및 1돈중 무게는 다음과 같이 變遷한 것으로 判斷되며 總括하면 다음 表와 같다.

<表 13>

朝鮮代 度量衡器의 實크기의 變遷

年 代	1營造尺 길이	1 말 크기	1 돈 중 무게
世宗 28(1446)年	27.6cm	4.12ℓ	2.66g
肅宗代~英祖代	↓ 29.8cm	↓ 5.19ℓ	↓ 2.99g
憲宗代	"	"	↓ 3.45g
高宗代	"	"	3.75g
光武 6(1902)年(平式院法)	30.3cm	23.08ℓ	"
光武 9(1905)年(從前法)	"	18.00ℓ	"

(1) 营造尺 길이는 다른 자에 비해서 가장 적게 變하였고 그 實질이는 世宗 28年的 27.6cm에서 中年에 29.8cm로 變한 後 光武 6年的 平式院法에 의해서 30.3cm로 變遷한 것으로 생각된다.

(2) 한말(1斗)의 크기는 世宗代의 4.12ℓ에서 자의 길이의 變遷에 따라서 者干씩 增加하다가 平式院 標準量器에서 一時의으로 急作히 23.08ℓ로 되었고 光武 9년의 新度量衡法에 의해서 18ℓ로 줄어던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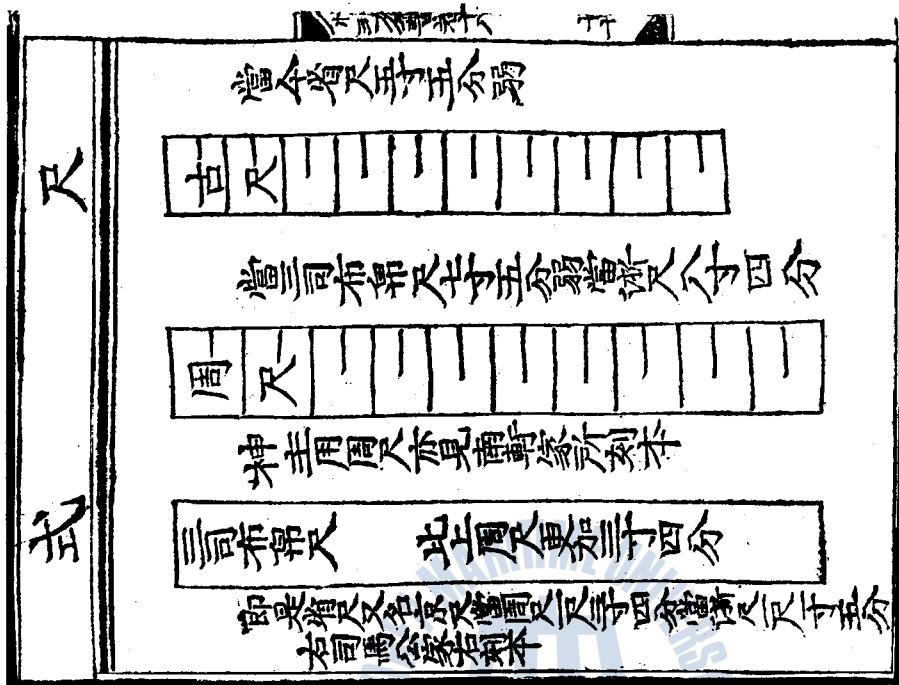
(3) 한돈중(1錢重)의 實무게는 世宗代의 2.66g에서 肅宗~英祖代의 2.99g을 거쳐서 점차로 增加되다가 高宗代에 一時の으로 3.45g로 되었고 光武 6년의 平式院法에 의해서 3.75g로 變遷한 것으로 생각된다.

2. 通用度量衡器의 크기는 그 原器의 크기와 比해서 상당히 큰 差異를 보이는 것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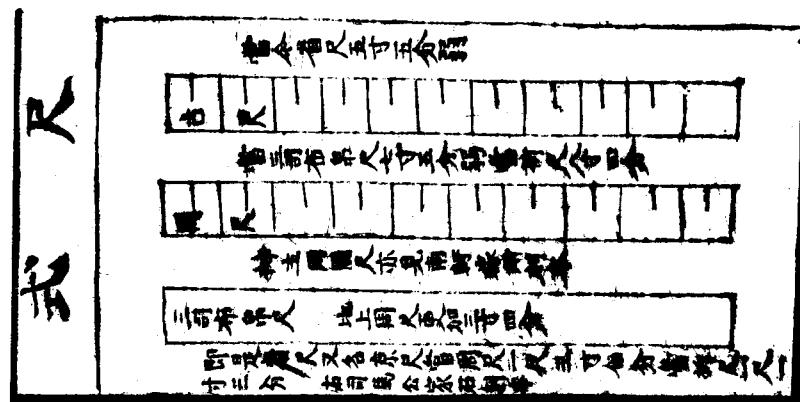
3. 朝鮮代의 葉錢中에서 當2錢은 衡制度의 單位重量과 有關하게 鑄造된 것이 많으나 當1錢은 世宗代의 楷書體錢의 重量과 同一하게 鑄造된 것이 많았다.

參 考 文 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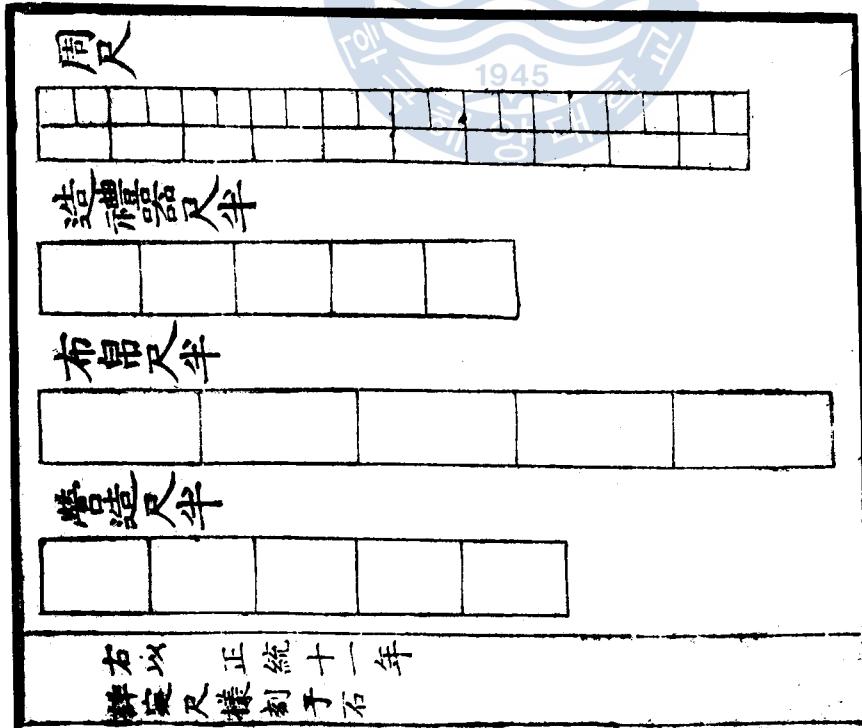
1. 高橋 正 : 度量衡衍義(日語版), p.48(1922).
2. 全相運 : 韓國科學技術史, 正音社, p.148(1979).
3. 高麗史, 食貨志, 東亞大學校, 7卷, p.135, 305(1971).
4. 高麗史, 刑法志, 東亞大學校 7卷, p.296, 586(1971).
5. 李定求 : 四千年文献通考, 東明社, p.101(1927).
6. 前揭書(2), p.150.
7. 前揭書(2), p.152.
8. 前揭書(1), p.50.
9. 前揭書(1), p.51~52.
10. 朴興秀 : 李朝尺度에 관한 研究, 大東文化研究 4, p.199~226(1967).
11. 朴興秀 : 李朝尺度 基準으로서의 現水標의 價值, 科學技術研究 3, p.1~11(1975).
12. 朴興秀 : 李朝尺度 標準에 관한 考察, 素岩 李東植先生華甲記念 論文集, p.281~293(1981).
13. 經國大典, 一志社, p.505~506, 709(1979).
14. 喪禮備要 圖篇, 金長生撰, p.20, 北漢太白寺藏板(1620).
15. 四禮便覽, 卷之5, 喪禮 喪圖二, 高宗10年(1844).
16. 丘濬 : 朱子家禮, 卷上, 家禮圖, p.15(明代).
17. 胡廣等 : 性理學大全書, 卷之18, 家禮 1, p.17, 永樂 13(1414)年 御製序.
18. 喪禮儀輯錄, 書疏式篇, p.26, 作者. 發行年代 未詳.
19. 增補四禮便覽, 卷之五, 喪禮, 喪圖三, 書業堂藏板 光武 4(1900)年.
20. 前揭書(1), p.53.
21. 柳子厚 : 朝鮮貨幣考, 現文社, p.680~683(1940).
22. 前揭書(1), p.54.
23. 世宗實錄(第113卷), 世宗大王記念事業會, 18卷, p.18, 75(1972).
24. 繢大典, 法制處, p.324, 473(1965).
25. 前揭書(1), p.59.
26. 前揭書(1), p.102.
27. 前揭書(1), p.57.
28. 前揭書(1), p.58.
29. 玉野・水泉 : 度量衡, 世界大百科事典, 16卷, p.667, 平凡社(1969).
30. 大韓造幣公社, 韓國貨幣全史, p.55, 84. 89~108(1971).
31. 前揭書(5), p.100~101.
32. 前揭書(5), p.102.
33. 大典會通 解題(日語版), 中樞院(朝鮮總督府), p.76, 77(1939).
34. 尹商鉉 : 朝鮮五百年史, 光東書局, p.39(1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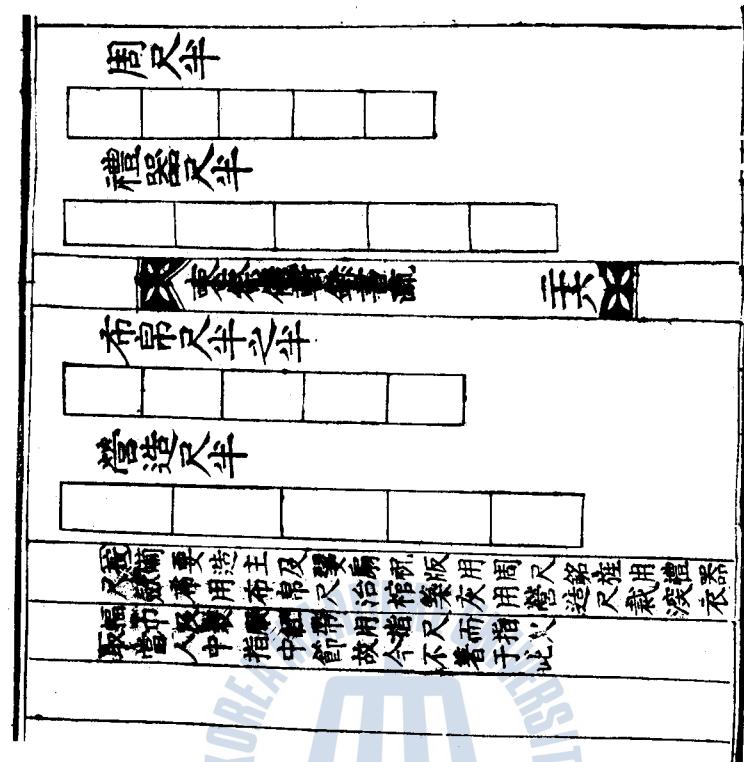
寫2. 性理大全書 圖尺 (½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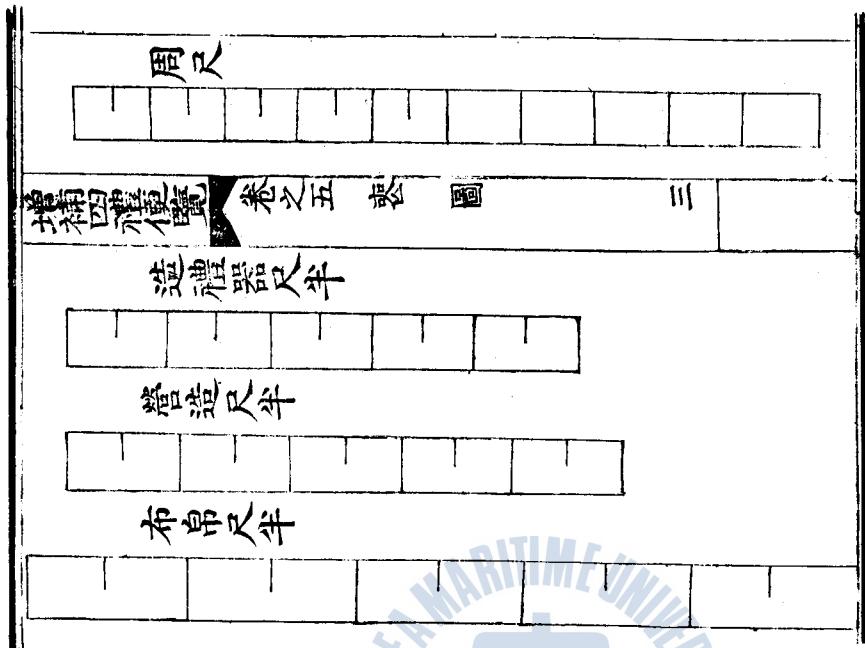
寫1. 朱子家種 圖尺 (½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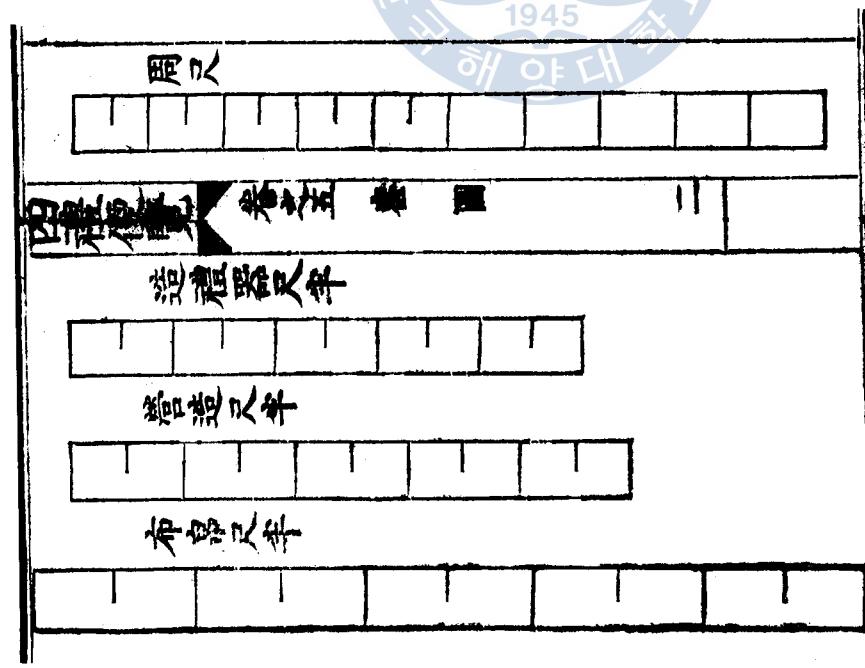
寫3. 表禮備要 圖尺 (½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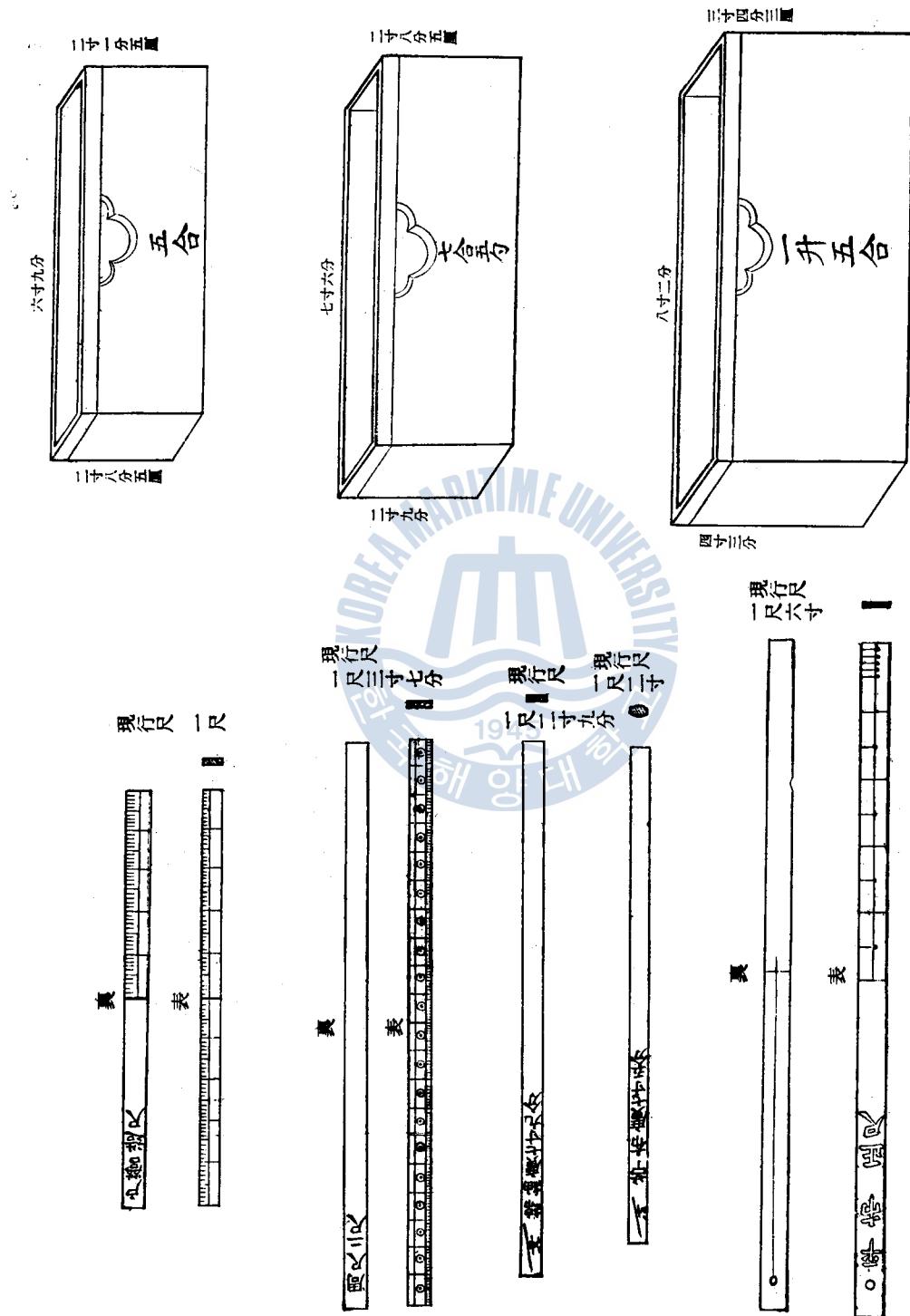
寫4. 表祭儀輯錄 圖尺 (½縮圖)



寫 6. 增補四種便覽 四尺 (½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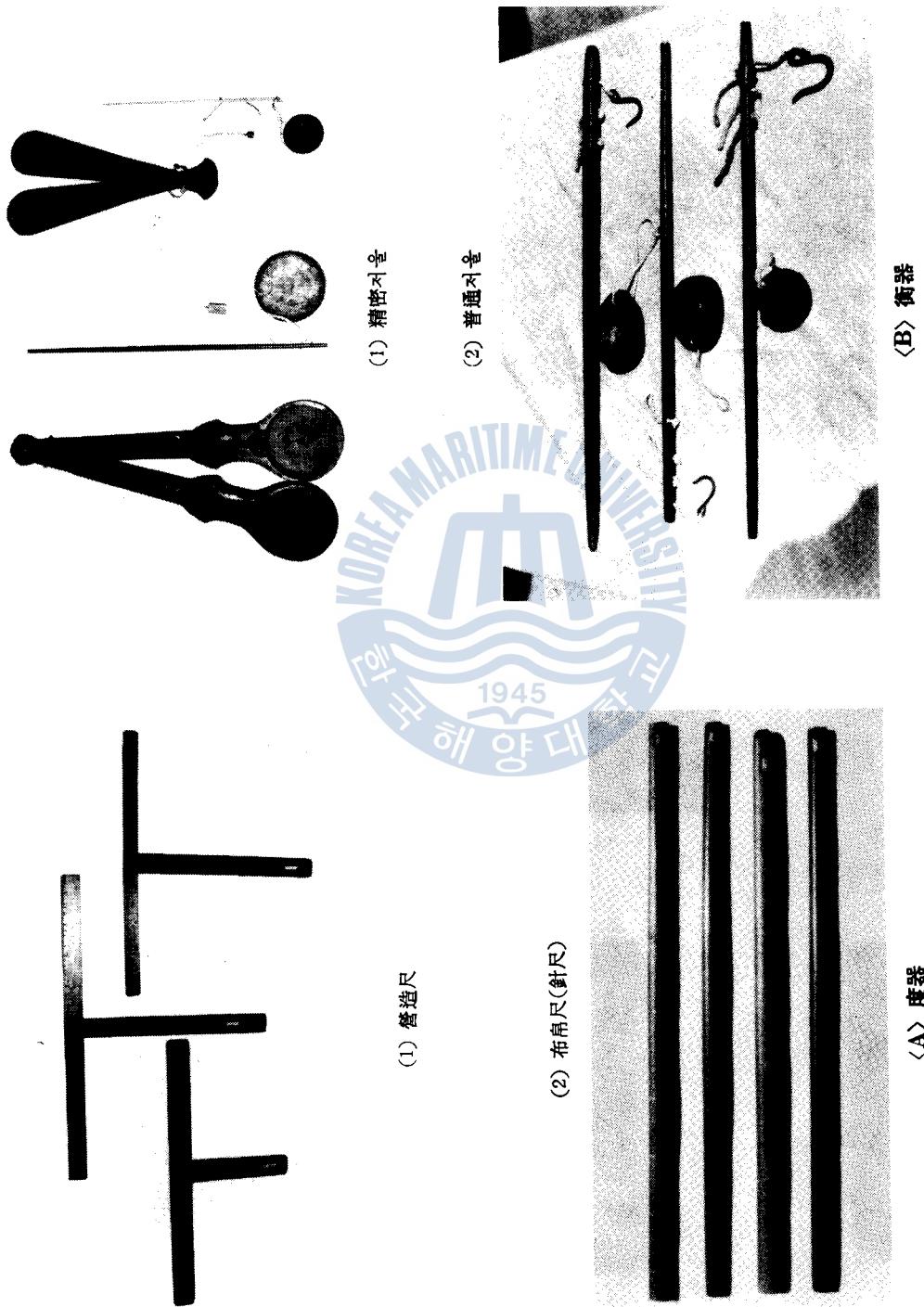


寫 5. 四種便覽 四尺 (½縮圖)



寫 8. 度量衡行義 幾尺 (1/2縮圖)

寫 7. 度量衡行義 幾尺 (1/2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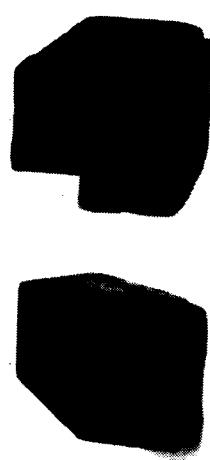
(1) 五合量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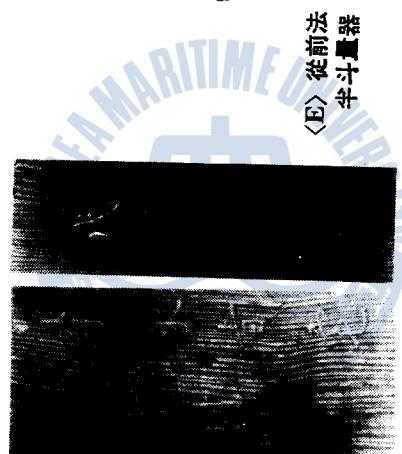
(2) 七合五勺量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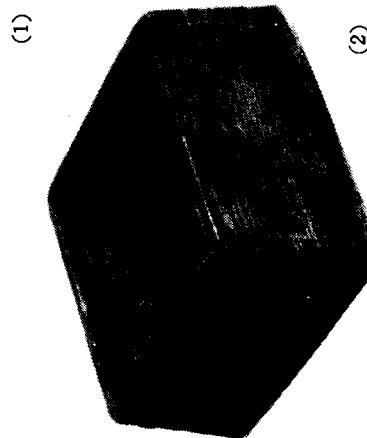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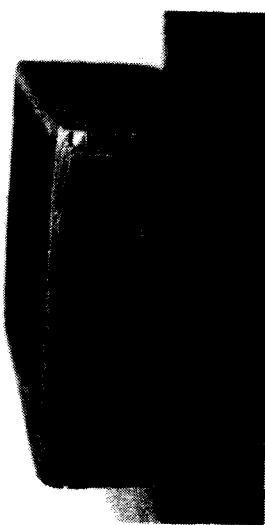
(3) 一升五合量器
(C) 從前法量器



(1) 半斗量器
(2) 一升量器



(1) 從前法半斗量器
(2) 餅料



(2)

寫9. 朝鮮代度量衡器(2)